

의안 번호	54
----------	----

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2023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22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54호

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4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7.

2. 제안이유

-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,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송 콘텐츠의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
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(개정 2014. 5. 28.)

나.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에 의거 설립되었으며,
본조 제7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(시청자
미디어센터)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
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,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상호 체결한
“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” 제5조에서 센터
운영비의 20%는 성북구가 분담하기로 하였음

- 운영비 분담비율 : 방송통신위원회 60%, 서울시 20%, 성북구 20%

라.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기능

- 시청자 미디어교육·체험 및 홍보 지원
- 시청자의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및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
-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지원 및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「방송법」 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편성

5. 검토의견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1)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-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(이하 “미디어센터” 한다)는 2015. 12. 15.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설립·운영되고 있는 시설임.

나. 출연근거

- 미디어센터에 대한 출연 근거는 「방송법」 제90조의2제7항 및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을 위한 업무협약」 제5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2017회계연도부터 의회 동의를 얻어 운영비의 20%를 분담하고 있음.

「방송법」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<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>

제5조(운영비 분담)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분담한다.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다. 출연금 현황 및 추이

- 2023년도 미디어센터의 출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증가 등으로 2,054만원이 증가된 2억 9,594만원이 편성되었음. 연도별 출연금 추이 및 운영비는 다음과 같음.

〈연도별 출연금 현황〉

(단위 : 천원)

연도	2021년	2022년	2023년(안)
출연금 규모	265,850	275,400	295,940
전년대비 증감액	101,000	9,550	20,540
전년대비 증감률	61.3%	3.6%	7.5%

〈전년도대비 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사업비 현황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2년		2023예산(안)(B)	증감 (B-A)	증·감 사유
	본예산	최종예산(A)			
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	271,000	275,400	295,940	20,540	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및 시설관리비 증액

라. 종합의견

- 본 출연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, 「방송법」 및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을 위한 업무협약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,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